

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선임 및 해임 신고)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국가기술자격수첩

2.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 경력증명서(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수탁기관의 장은 매 반기별로 안전관리직원 선·해임 현황을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사무소장”을 “영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으로 하고,

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수탁기관의 장은 매 반기별로 대리자 선임 현황을 별지 제12호의2 서

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1호 서식, 제11호의2 서식, 제12호 서식 및 제12호의2 서식을 각
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업무위탁에 대한 경과조치) 제19조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·해임
신고접수 및 제25조제2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접
수 업무 위탁기관의 안전사무소 자료 이전, 전산시스템구축 등의 기간
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수행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
수행하고 위탁업무수행 전 기간은 사무소장이 계속하여 수행한다.

광산안전관리직원 []선임
[]해임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일
신고인	상호 또는 명칭		
	대표자	생년월일	
	주소		(전화번호:)
광업권	광산명	등록번호	
	소재지	(전화번호:)	
	광종명		
안전 관리직원 구분		[] 안전관리자 [] 안전감독자 [] 안전계원 [] 안전감독계원	
선임자 또는 해임자	자격증 번호		
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	
	[] 선임 [] 해임	연월일	년 월 일
직무 범위	직무의 종류		
	담당구역		
	직접감독자 성명		직위
안전 관리직 경력		년 월 일부터 (년 개월) 년 월 일까지	

「광산안전법」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산안전관리직원의 []선임 []해임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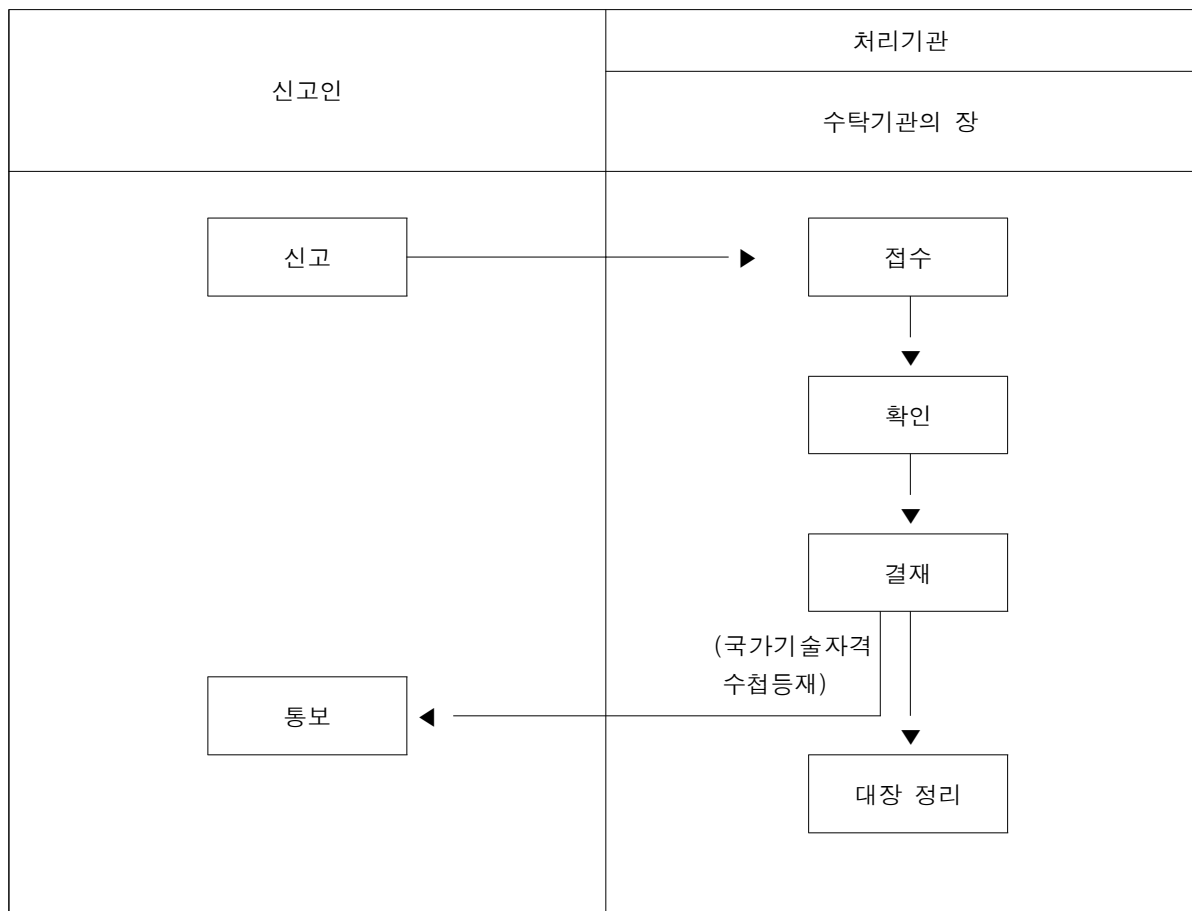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국가기술자격수첩	수수료
	2.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 1부(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 음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광산안전관리직원 선·해임 현황

☐ 선임 총괄 현황

(0000. 0.0 기준, 단위 : 명)

구 분	광산 수(개)	안전관리직원 정원	안전관리직원 현원(선임)	증감(정원/현원)	비 고
동부안전사무소					
중부안전사무소					
서부안전사무소					
남부안전사무소					
합 계					

□ 분야별 선임 및 해임 현황

(0000. 0.0 기준, 단위 : 명)

[illegible]

☐ 광산별 선임 및 해임 현황

일련 번호	광산정보								광산안전관리직원 정보						
	상호	대표자	광산명	소재지	광업권 등록번호	광종	안전관리직원		구분	성명	생년월일(성별)	선임일자	해임일자	자격종류 (자격번호)	직무
							정원	현원							

비 고 : 1. 광산안전관리 직원 정보 구분란에는 안전관리자, 안전감독자, 안전계원, 안전감독계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2. 직무란에는 안전계원인 경우 갱내, 갱외, 기계, 전기, 화약·발파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 선임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일
------	------	------	----

신고인	상호 또는 명칭		
	대표자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번호:)		

광업권	광산명	등록번호
	소재지 (전화번호:)	
	광종명	

안전 관리직원 구분	[] 안전관리자	[] 안전감독자
	[] 안전계원	[] 안전감독계원

전임 안전관리직원의 성명	
---------------	--

대리자	자격증 번호		
	성명		
	주소 (전화번호:)		
	선임 연월일 . . .		
	안전관리직 경력 . . . 부터 . . . 까지(년 개월)		

대리의 이유	
--------	--

「광산안전법」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을 신고합니다 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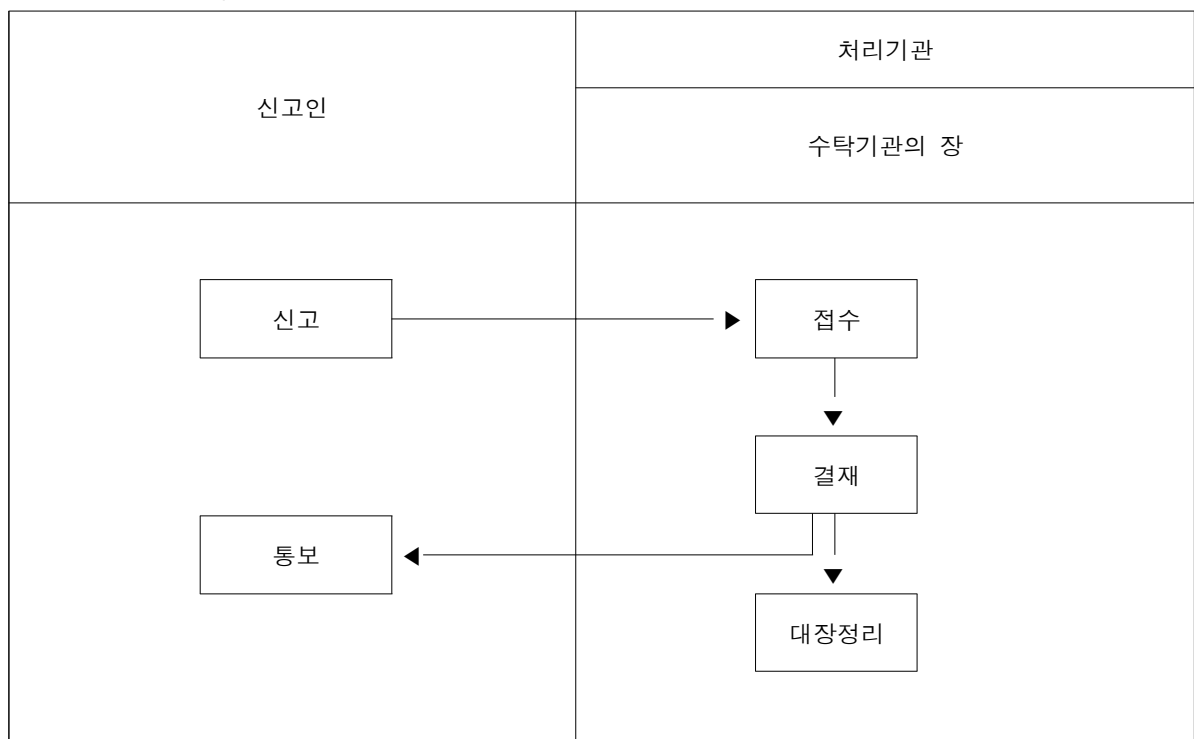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
		없 음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 선임 현황

일련 번호	광산정보						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 정보						
	상호	대표자	광산명	소재지	광업권 등록번호	광종	구분	성명	생년월일(성별)	선임일자	해임일자	자격종류 (자격번호)	전임 안전관리직원

비 고 : 광산안전관리 직원 정보 구분란에는 안전관리자, 안전감독자, 안전계원, 안전감독계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선임 및 해임 신고)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<u>사무소장에게</u> 신고하여야 한다. 1. 국가기술자격수첩 2.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 경력증명서(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) <u><신 설></u>	제19조(선임 및 해임 신고)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<u>영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</u> 신고하여야 한다. 1. 국가기술자격수첩 2.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 경력증명서(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) ② <u>수탁기관의 장은 매 반기별로 안전관리직원 선·해임 현황을 별지 제 11호의2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
제25조(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) ① (생략)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선임한	제25조(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

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안전계원의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<신 설>

----- 영 제20조
제3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수탁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-----

③ 수탁기관의 장은 매 반기별로 대리자 선임 현황을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<부 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업무위탁에 대한 경과조치)
제19조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·해임 신고접수 및 제25조제2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접수 업무 수탁기관의 안전사무소 자료 이전, 전산시스템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수행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수행하고 위탁업무수행 전 기간은 사무소장이 계속하여 수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264